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 청 남 도
(재 난 안 전 실)

목 차

< 일 반 회 계 >

■ 안 전 정 책 과 ----- 1

■ 사 회 재 난 과 ----- 31

■ 자 연 재 난 과 ----- 47

■ 하 천 과 ----- 87



안 전 정 책 과



안 전 정 책 과

1.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4
2. 안전문화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6
3.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8
4.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10
5. 안전충남비전 업무추진	12
6. 충남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	14
7.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16
8. 민방위의 날 훈련참석자 급식비	18
9.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20
10.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운영	22
11. 지역통합방위회의 등 행사운영	24
12. 시군평가관 여비 등	26
13. 을지태극연습 참가자 급식비	28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사업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따른 도민 불안감 가중, 모든 도민에게 특성에 맞는 보험 혜택 제공
- 사업 대상 : 도내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810,511천원** 【기정액 : 880,000천원 + 추경 증감 : △69,489천원】
- ※ 감액 사유 : 당진시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조례 폐지에 따른 지원 불가(인구 : 17만명)
- 사 업 량 : 충남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모든 도민에게 특성에 맞는 안전보험 가입
- 지원 근거 :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중점과제 1-2-1) / 재난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복지 실현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험기관에 지급하는 도민안전 보험료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8. 12.)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 1,621,022천원 ○ 800원 × 2,026,277명 ≒ 1,621,022천원 - 6개 항목(재난, 대중교통, 스쿨존, 자연재해, 강도) 평균 가입금액 500원 + 추가담보금액 (추가담보 : 농기계 사고, 뺑소나·무협자, 익사, 미아 찾기 지원금 등(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준)) ※ 당진시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조례 폐지에 따른 지원 불가(인구 : 17만명)	
총사업비	1,621,022천원(도비 810,511, 시군비 810,511)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621,022	-	1,760,000	1,621,022	△138,978	-	-
국 비	-	-	-	-	-	-	-
도 비	810,511	-	880,000	810,511	△69,489	-	-
시군비	810,511	-	880,000	810,511	△69,489	-	-
기 타	-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	최천재 (행) 2170	최명규 (행)5611	유기설 (행)5622

안전문화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진흥
- 사업 위치 : 전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 【 기정액 : 27,000천원 + 추경 증감 : △17,000천원 】
- ※ 감액 사유 : 도민 안전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교육, 캠페인 개최 및 교육자료,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 및 캠페인을 미 개최 함으로써 사업비를 감액 하고자 함.
- 사 업 량 : 안전문화 교육 자료 및 홍보물 제작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도민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안전문화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 10,000천원 ○ 안전문화 홍보용 사진 전시회 개최 : 1,500천원 ○ 안전문화 교육 리플릿 및 포스터 등 자료 제작 : 8,500천원 · 안전신고 스티커 : 70원 × 16,000매 = 1,120천원, · 안전교육용 책자 : 3,000원 × 500부 = 1,500천원 · 사진전시회 배너제작 및 기타 운영비 등 : 5,880천원	
총사업비	10,00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000	-	27,000	10,000	△17,000	-	
국 비	-	-	-	-	-	-	-
도 비	10,000	-	27,000	10,000	△17,000	-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0	22,148	22,852	4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	최천재 (행) 2170	김경희 (행) 5616	이주미 (행) 2172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의식 고취
- 사업 위치 : 전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00천원** 【기정액 : 9,000천원 + 추경 증감 : △7,000천원】
- ※ 감액 사유 : 당초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을 2회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미 개최하고 하반기 운영은 최소화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감액 하고자 함.
- 사 업 량 :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운영(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정기총회 및 분과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경비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 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1회) : 2,0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1,800천원 - 100,000원 × 18명 = 1,800,000원 ○ 기타 운영비(회의자료 인쇄 및 물품구입 등) : 200천원 - 200,000원 × 1식 = 200,000원	
총사업비	2,00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000	-	9,000	2,000	△7,000	-	
국 비	-	-	-	-	-	-	-
도 비	2,000	-	9,000	2,000	△7,000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	최천재 (행) 2170	김경희 (행) 5616	권준애 (행) 5630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도민안전문화의식 고취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 스스로 생존능력 배양 제고 및 안전의식 체질화
- 사업 위치 : 전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기정액 : 200,000천원 + 추경 증감 : △200,000천원 】
 - ※ 감액 사유 : 재난 위기 시 행동할 수 있도록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체험교육이 곤란하다 판단되어,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비 전액을 감액 하고자 함.
- 사 업 량 : 3,000명 (체험교육 인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지진대피, 버스비상탈출, 건물탈출체험(완강기 이용법) 등 응급상황시 대처요령 교육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 2020. 9.22. 계약 해지	
총사업비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	-	200,000	-	△200,000	-	-
국 비	-	-	-	-	-	-	-
도 비	-	-	200,000	-	△200,000	-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98,000	173,364	24,636	8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문화팀	최천재 (행) 2170	김경희 (행) 5616	권준애 (행) 5630

안전충남비전 업무추진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통 계 목	일반운영비 (201-01,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충남비전 실행력을 담보하고 구체화할 세부과제 본격시행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 ~ 2020.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000천원** 【기정액: 21,150천원+ 추경증감: △13,15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교육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감액
- 사 업 량 : 『안전충남 2050』 실행과제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안전충남 2050』 실행과제 중 안전정책과 소관 실행과제 추진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무관리비(201-01) : 8,000천원 ○ 안전충남 2050 책자 인쇄: 10,000원 X 50부 = 500천원 ○ 안전신문증 제작: 500원 X 1,000부 = 500천원 ○ 안전충남비전 자문수당: 100,000원 x 10명 x 2회 = 2,000천원 ○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2,000천원 ○ 재난안전전문기관 타당성 용역 자문위원 수당: 200,000원 X 5명 X 3회 = 3,000천원	
	■ 행사운영비(201-03) : 0천원 (당초예산 : 3,150천원, 추경증감 : △3,150천원) ○ 안전보안관 신규교육 1급 강사수당 : 370,000원 X 4권역 X 1회 = △1,480천원 ○ 안전보안관 신규교육 2급 강사수당 : 130,000원 X 4권역 X 1회 = △520천원 ○ 안전보안관 신규교육 책자인쇄 및 홍보물 : 2,875원 X 400부 = △1,150천원	
총사업비	8,00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1,150	-	21,150	8,000	△13,150	-	계속
국 비	-	-	-	-	-	-	-
도 비	21,150	-	21,150	8,000	△13,150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2,500	19,738	2,762	87.7%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산업팀	최천재 (행) 2170	이은석 (행) 5612	이진호 (행) 2173

충남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	정책사업	도민안전 및 재난예방
	단위사업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세부사업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중앙부처의 재난안전 R&D 투자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충남의 재난안전 정책 개발 및 산업육성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담조직 설립 검토 필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년 2월 ~ 2020년 6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3,000천원 【기정액: 50,000천원+ 추정증감: △7,000천원】
- ※ 증감 사유 : 충남 재난안전 전문기관 용역 계약금 후 입찰차액
- 사 업 량 : 용역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충청남도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 공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제2항 제2조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 : 43,000천원 ○ 용역 1식 x 43,000천원	
총사업비	43,00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	50,000	43,000	△7,000	-	-
국 비	-	-	-	-	-	-	-
도 비	50,000	-	50,000	43,000	△7,000	-	-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안전산업팀	최천재 (행) 2170	이은석 (행) 5612	임장욱 (행) 5624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운영
	단위사업	민방위 운영 및 기반확충
	세부사업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관련 경비 지원으로 민방위대원의 역량강화 및 자긍심 고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지정액 : 5,600천원 + 추경 증감 : △5,600천원 】
- ※ 증감 사유 : 중앙 창설기념행사의 취소로 경비관련 국고 미교부
- 사 업 량 : 연 1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행사 참석에 따른 민방위대원 경비 지원
- 지원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 행사 참석 민방위대원 경비 : 373천원 x 15개 시·군 ÷ △5,600천원	
총사업비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	-	5,600	-	△5,600	-	
국 비	-	-	5,600	-	△5,600	-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600	3,667	1,993	65.5%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 (행) 2170	이수용 (행) 5613	박유리 (행) 5628

민방위의 날 훈련참석자 급식비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민방위 운영 및 기반 확충
	세부사업	민방위 운영 및 육성지원
	통 계 목	행사실비지원금 (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참석자를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훈련 참가율 제고
- 사업 위치 : 도내 시범훈련 대상 1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지정액 : 2,700천원 + 추경 증감 : △2,700천원 】**
 - ※ 증감 사유 : 을지태극연습 조정(대체훈련)으로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미실시에 따른 급식비 전액 감액
- 사 업 량 : 훈련참석자 급식제공 337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실시되는 도 단위 민방위 실제훈련 참석자 급식비 지원
- 지원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민방위의 날 훈련참석자 급식비 ○ 민방위의 날 훈련참석자 급식비 : 8천원 × 337명 = △2,700천원	
총사업비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	-	2,700	-	△2,700	-	
국 비	-	-	-	-	-	-	
도 비	-	-	2,700	-	△2,7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700	2,7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 (행) 2170	이수용 (행) 5613	조주현 (행) 5626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민방위 운영 및 기반 확충
	세부사업	민방위 운영 및 육성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을 통한 민방위 대원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
- 사업 위치 : 도내 시범훈련 대상 1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지정액 : 9,500천원 + 추경 증감 : △9,500천원 】**
 - ※ 증감 사유 : 을지태극연습 조정(대체훈련)으로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미실시에 따른 예산 전액 감액
- 사 업 량 : 민방위 훈련 1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실시되는 도 단위 시범훈련비 지원으로 훈련절차 숙달 및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 구축
- 지원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 △9,500천원 ○ 훈련장 설치(무대차량 등) : △3,000천원 ○ 훈련장 음향 및 방송시스템 설치 : △2,000천원 ○ 현수막, 상황판 등 제작 : △1,000천원 ○ 훈련소모품(연막탄, 음료, 기타) : △3,500천원	
총사업비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	-	9,500	-	△9,500	-	
국 비	-	-	-	-	-	-	
도 비	-	-	9,500	-	△9,5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	9,800	200	98%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 (행) 2170	이수용 (행) 5613	조주현 (행) 5626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비상대비 운영
	세부사업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준비 및 원활한 비상대비업무 운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1,400천원 【 기정액 : 41,400천원 + 추경 증감 : △20,000천원 】**
- ※ 증감 사유 : 을지태극연습 및 충무훈련 조정(점검 및 대체훈련)에 따른 예산 감액
- 사 업 량 : 비상대비훈련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훈련참여 근무자(공무원) 급식비 지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원활한 비상대비훈련 준비 및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위한 행정운영비
- 지원 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 4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 4(보상)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3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을지태극연습·충무훈련 및 통합방위 운영 : 21,4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등 : 4,000천원 ○ 충무계획 등 인쇄비 : 4,000천원 ○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 충무) 관련 구입 및 임차 : 3,000천원 ○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 충무) 참가자 급량비 : 600천원 ○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 충무) 업무 추진 : 1,500천원 ○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 : 4,800천원 ○ 통합방위·예비군 등 업무발전 유공 표창장 제작 : 3,500천원	
총사업비	21,400천원(도비 21,4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1,400	-	41,400	21,400	△20,000	-	
국 비	-	-	-	-	-	-	
도 비	21,400	-	41,400	21,400	△2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7,260	37,076	184	99.5%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 (행) 2170	이수용 (행) 5613	채필주 (행) 5627

지역통합방위회의 등 행사운영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비상대비 운영
	세부사업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통합방위행사 지원을 통한 내실있는 행사 추진 및 도민 안보의식 고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400천원 【 지정액 : 9,000천원 + 추경 증감 : △2,600천원 】**
-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지역통합방위회의 및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등 주요행사 조정으로 인한 예산 감액
- 사 업 량 : 지방통합방위회의 등 2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지방통합방위회의 등 통합방위행사 개최에 따른 경비
- 지원근거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 민방위기본법 제4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 ④ 시도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이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통합방위회의 등 행사운영비 ○ 하반기 통합방위협의회의 : 4,200천원 - 행사운영경비(음향장비, 현수막, 표창장 제작 등) : 4,200천원 ○ 2020년도 민방위강사 위촉식 : 2,200천원 - 강사수당 : 300천원 × 2명 × 1회 = 600천원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도 공무원교육원)에 의거, 특별 강사 2급(해당분야 권위자로서 특별강사 2급 기준으로 강사료 책정)으로 산출 - 행사운영경비(현수막, 위촉장 및 강사수첩 제작 등) : 1,600천원	
총사업비	6,400천원(도비 6,4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6,400	-	9,000	6,400	△2,600	-	
국 비	-	-	-	-	-	-	
도 비	6,400	-	9,000	6,400	△2,6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 (행) 2170	이수용 (행) 5613	박유리 (행) 5628

시군 평가관 여비 등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비상대비 운영
	세부사업	을지태극연승 및 통합방위 운영
	통 계 목	국내여비 (202-01)

□ 사업개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 4(보상)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시군 평가관 여비 등 : △ 13,500천원 ○ 비상대비훈련 내부평가단(15개 시군 × 1명 × 4일) : △4,500천원 ○ 비상대비훈련 외무전문가 여비 : △4,500천원 ○ 통합방위 업무추진(375천원 × 12월) : △4,500천원	
총사업비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	-	13,500	-	△13,500	-	
국 비	-	-	-	-	-	-	
도 비	-	-	13,500	-	△13,5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150	10,905	1,245	89.8%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 (행) 2170	이수용 (행) 5613	채필주 (행) 5627

을지태극연습 참가자 급식비	정책사업	민방위 및 비상대비 운영
	단위사업	비상대비 운영
	세부사업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운영
	통 계 목	행사실비지원금 (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을지태극연습 및 충무훈련 등 비상대비훈련 유관기관 참가자를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훈련 참가율 제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기정액 : 3,312천원 + 추경 증감 : △3,312천원 】**
 - ※ 증감 사유 : 을지태극연습 및 충무훈련 조정(점검 및 대체훈련)에 따른 예산 감액
- 사 업 량 : 훈련참석자 급식제공 414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훈련 참가자(유관기관) 급식비 지원
- 지원 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 4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 4(보상)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3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을지태극연습 및 충무훈련 참가자 급식비 : △3,312천원 ○ 을지태극연습 참가자 급식비 : 8천원 × 207명 × 2회(을지태극, 충무) = △3,312천원	
총사업비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	-	3,312	-	△3,312	-	
국 비	-	-	-	-	-	-	
도 비	-	-	3,312	-	△3,312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430	2,424	6	99.8%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민방위비상대비팀	최천재 (행) 2170	이수용 (행) 5613	채필주 (행) 5627

사 회 재 난 과



사회재난과

1.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34
2. 민관협력 기능별 재난예방 및 대응 활동 ... 36
3. 재난대비 안전장비 지원 38
4.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40
5.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및 워크숍 42
6.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반납금 ... 44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정책사업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단위사업	재난관리체제 확립
	세부사업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지역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993천원** 【기정액 : 8,100천원 + 추경 증감 : △6,107천원】
- 사 업 량 : 코로나19로 인해 위원회 취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재난의 효과적인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유기적인 민-관 협력방안 논의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및 자원 발굴·육성
 - (평 시) 재난 시 단체별 협력방안 논의 및 역할 정립, 상시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 수행
 - (재난 시) 신속한 인명구조·수색, 현장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 1,993천원 ○ 기타 : 1,993천원 · 사무용품 등 : 1,993천원 × 1회 = 1,993천원	
총사업비	1,993천원(도비 1,993)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993	-	8,100	1,993	△6,107	-	
국 비	-	-	-	-	-	-	
도 비	1,993	-	8,100	1,993	△6,107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000	4,291	2,709	61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김상태 (행) 2180	정병우 (행) 3271	이태현 (행) 3284

민관협력 기능별 재난예방 및 대응 활동	정책사업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단위사업	재난관리체제 확립
	세부사업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실비지원금(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관협력 기능별 재난안전 교육·훈련 계획('16년 수립)에 따라, 재난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시 네트워크 활성화로 민-관 공동대응 협조체계 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93천원** 【기정액 : 23,000천원 + 추경 증감 : △22,807천원】
- 사 업 량 :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유형별 재난대응훈련 및 민관협력 전문교육 워크숍 취소
※ 전액 삭감하지 않은 사유 : 민관협력 위원 및 안전한국 컨설팅 위원 여비 지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재난·안전사고 시 신속한 인명 구조 및 시설 응급복구 등을 위한 민관협력 기능 숙달을 위해 민간단체 등 교육·훈련(위기유형별 특성에 따른 현장·토론회 등) 실시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1항 및 제4항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③항 중략)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무관리비 : 0천원(기정액 : 18,500천원 + 추경증감 : △18,500천원) ○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유형별 재난대응훈련 및 민관협력 전문교육워크숍 취소 ■ 행사실비보상금 : 193천원(기정액 : 4,500천원 + 추경증감 : △4,307천원) ○ 민관협력 위원 및 안전한국 컨설팅 위원 여비 : 65천원×3명×1회=193천원	
총사업비	193천원(국비 193)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93	-	23,000	193	△22,807	-	
국 비	193	-	23,000	193	△22,807	-	소방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소방안전교부세)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500	20,301	199	9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김상태 (행) 2180	정병우 (행) 3271	이태현 (행) 3284

재난대비 안전장비 지원	정책사업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단위사업	재난관리체제 확립
	세부사업	재난대비 안전장비 지원
	통 계 목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재난대응 활동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81,000천원** 【기정액 : 90,000천원 + 추경 증감 : △9,000천원】
※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후 잔액 삭감
- 사 업 량 : 충남도내 재난대비 활동 단체에 필요한 안전장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재난대비 활동하는 단체들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1항 및 제4항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③항 중략)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재난대비 안전장비 지원 : 81,000천원(기정액 : 90,000천원 + 추경 증감 : △9,000천원) ○ 재난대비 안전장비(공기충전기, 스쿠버장비, 레펠장비 등) ※ 보조사업자 공모선정후 잔액 삭감	
총사업비	81,000천원(도비 81,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81,000	-	90,000	81,000	△9,000	-	
국 비	-	-	-	-	-	-	
도 비	81,000	-	90,000	81,000	△9,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김상태 (행) 2180	정병우 (행) 3271	이태현 (행) 3284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정책사업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단위사업	재난관리체제 확립
	세부사업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가안전대진단 시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활용으로 안전점검 내실화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 【기정액 : 30,000천원 + 추경 증감 : △30,000천원】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실시로 미집행된 예산 전액 감액
- 사 업 량 : 안전점검 125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국가안전대진단 시 각 분야별(건축, 전기, 기계, 가스 등) 민간전문가 안전점검비용 확보 지원, 민간전문가 활용으로 안전점검 전문성, 실효성 제고 및 내실화
- 지원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설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 0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실시로 미집행된 예산 전액 감액	
총사업비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	30,000	-	△30,000	-	
국 비	30,000	-	30,000	-	△30,000	-	소방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2,000	20,463	1,537	93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김상태 (행) 2180	정병우 (행) 3271	신영택 (행) 3282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및 워크숍	정책사업	민생안전구현
	단위사업	민생사법경찰 지원단 운영
	세부사업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
	통 계 목	행사운영비(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전지방검찰청 및 5개 지청 관계자와의 수사 공조체계 구축 및 도, 시·군 특사경 등과 단속사례 공유 및 수사 역량강화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500천원 【기정액 : 9,000천원 + 추경 증감 : △3,500천원】
※ 증감 사유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행사 규모 축소로 예산 감액
- 사 업 량 : 상·하반기 워크숍 1회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도 및 시·군의 특사경에게 연 2회 직무능력 향상교육 및 워크숍 실시
- 지원근거 : 충청남도과 대전지방검찰청 간 서민생활보호 및 법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서 제4호 및 제6호

충청남도와 대전지방검찰청 간 서민생활 보호 및 법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서 제4호 및 제5호

4. 대전지방검찰청과 관내 5개 지청은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의 단속활동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의 역량 제고 및 수사활동 강화에 적극 협력한다.
6. 충청남도와 대전지방검찰청은 본 협약의 실행에 따른 단속반 편성 운영, 교육 및 활동 계획, 검사파견, 단속활동 지휘·감독 등 특별사법경찰 활동 전반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및 워크숍 : 5,500천원 ○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및 워크숍 : 5,500천원 - 2,750천원 × 2회 = 5,500천원	
총사업비	5,500천원(도비 5,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5,500	-	9,000	5,500	△3,500	-	
국 비	-	-	-	-	-	-	
도 비	5,500	-	9,000	5,500	△3,5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000	5,372	3,628	6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	김상태 (행) 2180	송선희 (행) 3105	허지연 (행) 3134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반납금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통 계 목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실제 재난상황에 기반한 재난대비훈련 실시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사업 위치 : 도내 전역(15시군)
- 사업 기간 : '19.1.1. ~ '19.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945천원**
 - ※ 증감 사유 :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집행잔액 반환금(원금+이자)
- * 보 조 율
 - 도 주관훈련 : 국비 50%, 도비 50%
 - 시군 주관훈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사 업 량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실제 재난에 기반한 토론기반훈련 및 현장훈련 등 재난대응 훈련 실시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훈련참여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반납금 : 5,945천원 - 사업비 : 65,000(국비 32,500, 도비 32,500) - 집행액 : 53,274(국비 26,637, 도비 26,637) - 집행잔액 : 11,716(국비 5,863, 도비 5,863) ※ 국비 반납금 : 5,945(원금 5,863, 이자 82) (국고보조금 정산내역서 별첨)	
총사업비	5,945천원(국비 5,94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 (B)	증감(B-A)		
계	5,945	-	-	5,945	5,945	-	
국 비	-	-	-	-	-	-	
도 비	5,945	-	-	5,945	5,945	-	원금 및 이자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1,453	106,434	15,019	88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19~2023)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김상태 (행) 2180	정병우 (행) 3271	이영우 (행) 3285

자 연 재 난 과



자연재난과

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0
2.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재해위험개선지구)(성립전) ...	52
3.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재해위험저수지)(성립전) ...	54
4. 자연재난대응훈련 추진	56
5. 도, 사군 자연재난관련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58
6. 자연재난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60
7.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62
8. 재난안전관제시스템 유지보수(재난안전포털 포함)	64
9. 폭염대책비(야외쉼터운영, 홍보 등)(성립전)	66
10. 폭염대책비(성립전)	68
11.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70
12. 8.1.~ 호우피해 응급복구(성립전)	72
13. 7.28~8.11.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재난지원금)(성립전) ·	74
14. 7.28~8.11. 집중호우 재난대책비(공공시설 국고추가) ·	76
15. 태풍 제9호 및 제10호 피해 복구비(재난지원금)(성립전)	78
16.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과목경정) ...	80
17.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과목경정) ...	82
18. 재난대비 긴급통신 민관합동 워크숍	84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재해위험지역정비 (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 및 경감
- 사업 위치 : 도내 15개 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사업 기간 : 2016년 ~ 2020년
- 예 산 액 : 26,508,150천원 **【 기정액 : 30,928,200천원 + 추경 증감 : △4,420,050천원 】**
- ※ 증감 사유 : 국비감액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사업규모 축소)
- 사 업 량 : 재해위험 개선지구 21개소 (전체 127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하천정비, 제방축조, 배수펌프장 설치 등
- 지원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재해위험지역 정비 : 26,508,150천원(국·도비) / 14,275,850천원(시군비) - 백석지구 : 하천정비 0.36km, 교량 2개소 = 3,250,000천원 / 1,750,000천원 - 마정지구 : 하천정비 4.4km = 1,300,000천원 / 700,000천원 - 봉명지구 : 하천정비 4.15km, 펌프장 증설 1개설 = 650,000천원 / 350,000천원 - 지산지구 : 배수관로정비 3.0km, 펌프증설 4개 = 1,496,950천원 / 806,050천원 - 천의지구 : 하천정비 3.27km, 교량 7개소 = 1,394,000천원 / 751,000천원 - 궁동지구 : 하천정비 2.3km, 교량 2개소 = 1,309,550천원 / 705,450천원 - 도마지구 : 하천정비 2.13km, 교량 5개소 = 3,250,000천원 / 1,750,000천원 - 미당천지구 : 하천정비 4.2km, 교량 3개소 = 886,200천원 / 477,800천원 - 농소천지구 : 하천정비 5.0km, 교량 11개소 = 1,430,000천원 / 770,000천원	

산출 기초	- 웅암지구 : 하천정비 0.6km, 교량 2개소 = 325,000천원 / 175,000천원 - 시왕지구 : 하천정비 4.0km, 교량 7개소 = 325,000천원 / 175,000천원 - 예산천지구 : 하천정비 2.2km, 교량 10개소 = 4,697,000천원 / 2,529,000천원 - 오곡지구 : 하천정비 0.75km = 884,000천원 / 476,000천원 - 소정지구 : 하천정비 6.1km 교량 12개소 = 650,000천원 / 350,000천원 - 반양지구 : 하천정비 7.2km, 교량 13개소 = 1,170,000천원 / 630,000천원 - 양지지구 : 하천정비 2.3km, 교량 2개소 = 324,500천원 / 175,500천원 - 연암지구 : 하천정비 4.1km, 펌프장증설 1개소 = 637,000천원 / 343,000천원 - 광기지구 : 하천정비 6.46km, 교량 7개소 = 650,000천원 / 350,000천원 - 일봉중앙지구 : 우수관로 3.6km, 펌프장 1개소 = 650,000천원 / 350,000천원 - 산정지구 : 하천정비 5.0km, 교량 13개소 = 750,000천원 / 406,000천원 - 송악지구 : 하천정비 2.1km, 펌프장 4개소 = 478,950천원 / 256,050천원	
총사업비	40,784,000천원(국비 20,392,000, 시군비 14,275,850, 지역개발기금 6,116,1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953,313,250	739,931,500	47,584,000	40,784,000	△6,800,000	172,597,750	
국 비	523,957,500	413,188,500	23,792,000	20,392,000	△3,400,000	90,377,000	국고
도 비	116,981,200	98,022,600	-	-	-	18,958,600	
시군비	306,258,400	228,720,400	16,655,800	14,275,850	△2,379,950	63,262,150	
지역개발기금	6,116,150	-	7,136,200	6,116,150	△1,020,050	-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35%, 지역개발기금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34,227,000	34,227,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 (행) 2185	박상용 (행) 3242	김정주 (행) 3253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재해위험개선지구)(성립전)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재해위험지역정비 (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으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사업 위치 : 도내 15개 시·군 재해 위험지역
- 사업 기간 : 2020년 ~ 2022년(신규사업)
- 예 산 액 : **1,820,000천원**
※ 증감 사유 :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2020. 7. 24. 사업계획 확정 / 행정안전부)
- 사 업 량 : 조기경보시스템 8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 업 내 용 : 계측기(강우량·수위·변위계), 옥외무선방송 및 강우·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지원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조기경보 시스템(8지구) : 1,820,000(국도비) / 980,000(시군비) ○ 재해위험지역 (8지구) : 1,820,000(국도비) / 980,000(시군비) - 예산 대곡지구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227,500 / 122,500 - 보령 소성지구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227,500 / 122,500 - 당진 장고항지구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227,500 / 122,500 - 보령 내항지구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227,500 / 122,500 - 아산 둔포2지구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227,500 / 122,500 - 예산 만사지구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227,500 / 122,500 - 아산 장재지구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227,500 / 122,500 - 예산 하포지구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227,500 / 122,500	
총사업비	2,800,000천원(국도비 1,820,000, 시군비 98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800,000	-	-	2,800,000	2,800,000	-	신규사업
국 비	1,400,000	-	-	1,400,000	1,400,000	-	국고
도 비	420,000	-	-	420,000	420,000	-	
시군비	980,000	-	-	980,000	980,000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 (행) 2185	박상용 (행) 3242	김정주 (행) 3253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재해위험저수지)(성립전)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재해위험지역정비 (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으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사업 위치 : 도내 15개 시·군 재해 위험지역
- 사업 기간 : 2020년 ~ 2022년(신규사업)
- 예 산 액 : 1,332,500천원
- ※ 증감 사유 :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2020. 7. 24. 사업계획 확정 / 행정안전부)
- 사 업 량 : 조기경보시스템 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 업 내 용 : 계측기(강우량·수위·변위계), 옥외무선방송 및 강우·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지원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조기경보 시스템(8지구) : 1,332,500(국도비) / 717,500(시군비) ○ 재해위험저수지 (8지구) : 1,332,500(국도비) / 717,500(시군비) - 천안 대동저수지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227,500 / 122,500 - 홍성 마온저수지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227,500 / 122,500 - 부여 현암저수지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227,500 / 122,500 - 공주 등대골저수지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325,000 / 175,000 - 공주 산소골저수지 : 계측기 설치, 모니터링·상황전파 시스템 = 325,000 / 175,000	
총사업비	2,050,000천원(국도비 1,332,500, 시군비 717,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050,000	-	-	2,050,000	2,050,000	-	신규사업
국 비	1,025,000	-	-	1,025,000	1,025,000	-	국고
도 비	307,500	-	-	307,500	307,500	-	
시군비	717,500	-	-	717,500	717,500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 (행) 2185	박상용 (행) 3242	김정주 (행) 3253

자연재난대응훈련 추진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재난대응훈련추진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훈련을 통한 시·군, 유관기관 간 융·복합 협조·지원체계 유지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200천원 【기정액 : 18,300천원 + 추경 증감 : △17,10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추진 불가
- 사업 량 : 풍수해 및 폭설대비 현장 재난대응 훈련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여름철 풍수해, 겨울철 폭설 대비 재난대응훈련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0천원 (당초예산 : 15,000천원, 추경증감 : △15,000천원)		
	○ 훈련 개최 사군 경상보조금 : △15,000천원 · 15,000천원 × 1식 = △15,000천원		
산출 기초	■ 사무관리비 : 1,200천원 (당초예산 : 3,300천원, 추경증감 : △2,100천원)		
	○ 사무용품 등 구입 : 400천원 · A4(15,000원 × 10BOX) = 150천원 · 생수(1,000원×50EA) × 5회 = 250천원 ○ 책자인쇄비 : 800천원 (당초예산 : 1,400천원, 추경증감 : △600천원) · 책자인쇄(10,000원 × 80부) = 800천원 ○ 훈련 자재·장비 임대 : △1,000천원 · 제설장비, 굴삭기 등 훈련 자재·장비 임대 = △1,000천원 ○ 음향장비, 무대설치 등 임대 : △500천원 · 음향장비, 무대설치 비용 = △500천원		
총사업비	1,20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8,300	-	18,300	1,200	△17,100	-	
국 비	-	-	-	-	-	-	
도 비	18,300	-	18,300	1,200	△17,1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9,500	19,050	450	97.7%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 (행) 2185	박상용 (행) 3242	함지호 (행) 3254

도, 시·군 자연재난관련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재난대응 역량강화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13개 협업 기능별 실·과 및 시군의 워크숍을 통한 자연재난대응 역량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000천원** 【 **기정액 : 15,300천원 + 추경 증감 : △9,300천원** 】
 -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추진 불가
- 사 업 량 :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2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도, 시군 재난관련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도, 시·군 자연재난관련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 사무관리비 : 0천원 (당초예산 : 15,300, 추경증감 : △9,300, 예산변경 6,000) ○ 워크숍 회의장·임차료 : △7,000천원 · 3,500천원 × 2회 = △7,000천원 ○ 책자, 홍보물, 현수막 제작 등 : △6,000천원 · 책자 10천원 × 100부 × 2회 = △2,000천원 · 재난안전 홍보물 3천원 × 500부 × 2회 = △3,000천원 · 현수막 100천원 × 5개 × 2회 = △1,000천원 ○ 식수, 간식비용 등 : 700천원 · 간식 3천원 × 100인 × 2회 = 600천원 / 식수 등 △100천원 ○ 필기구, 용지대 등 : △600천원 · 300천원 × 2회 = △600천원 ○ 감사료 : △1,000천원 · 500천원 × 2명 × 1회 = △1,000천원 ※ 예산 변경 6,000천원(재난대응 역량강화→자연재난업무추진) - (자연재난과-8395호)재해영향평가 협의건수 증가로 심의수당 부족으로 예산변경	
총사업비	6,00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6,000	-	15,300	6,000	△9,300	-	
국 비	-	-	-	-	-	-	
도 비	6,000	-	15,300	6,000	△9,3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000	15,300	2,700	8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 (행) 2185	박상용 (행) 3242	함지호 (행) 3254

자연재난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재난대응 역량강화
	통 계 목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인적 네트워크 구축, 보유자원의 상호 지원 및 합동 대응·응원체계 구축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기정액 : 7,650천원 + 추경 증감 : △7,650천원 】
-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추진 불가
- 사 업 량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재난관련 협업 유관기관 간 간담회 개최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연재난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 행사운영비 : 0천원 (당초예산 : 5,355천원, 추경증감 : △5,355천원) ○ 간담회 회의장, 숙소 임차료 : △3,500천원 · 3,500천원 × 1식 = △3,500천원 ○ 책자, 홍보물, 현수막 제작 등 : △1,000천원 · 책자 10천원 × 40부 = △400천원 · 재난안전 홍보물 10천원 × 40부 = △400천원 · 현수막 200천원 × 1식 = △200천원 ○ 식수, 간식비용 등 : △855천원 · 855천원 × 1식 = △855천원 ■ 자연재난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 행사실비보상금 : 0천원 (당초예산 : 2,295천원, 추경증감 : △2,295천원) ○ 간담회 참석자 식비 : △2,295천원 · 8천원 × 140여명 × 2일 = △2,295천원	
총사업비	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	-	7,650	-	△7,650	-	
국 비	-	-	-	-	-	-	
도 비	-	-	7,650	-	△7,65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000	3,826	3,174	55.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 (행) 2185	박상용 (행) 3242	함지호 (행) 3254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실질적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을 할 수 있는 정예화 된 조직 구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지역자율방재단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 【기정액 : 70,250천원 + 추경 증감 : △70,25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추진 불가
- 사 업 량 : 15개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원 6,633명 대상 중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지원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

-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 행사운영비 : 0천원 (당초예산 : 70,250천원, 추경증감 : △70,250천원) ○ 홍보 및 물품 등 : △10,250천원 (교육책자, 상패 등) ○ 재난안전교육 등 : △10,000천원 (방재단의 역할과 임무, 심폐소생술 교육 등) ○ 사진전시회 등 : △3,000천원 (태풍, 호우, 지진 등 재난사진 전시회) ○ 재난예찰장비 전시회 등 : △3,000천원 (재난예찰장비 및 방재 신기술 전시회 등) ○ 행사장 설치 및 운영 등 : △44,000천원 (스크린, 테이블, 의자 등)	
총사업비	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	-	70,250		△70,250	-	
국 비	-	-	-	-	-	-	
도 비	-	-	70,250	-	△70,25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2,500	13,500	9,000	6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 (행) 2185	박상용 (행) 3242	함지호 (행) 3254

재난안전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재난안전포털 포함)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난안전관제시스템 유지보수로 재난관리를 지원 체계 연중 운영
- 사업 위치 : 본관 6층 재난안전상황실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0,000천원 【 지정액 : 90,000천원 + 추경 증감 : △10,000천원 】**
 - ※ 증감 사유 : 입찰계약시 최저가입찰방식으로 계약하여 계약 후 잔액 일부 감액
- 사 업 량 : 재난안전관제시스템(영상, 음향, 지진계측기, 재난안전포털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1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재난안전관제시스템 유지보수 - 공공운영비 : 80,000천원 (당초예산 : 90,000천원, 추경증감 : △10,000천원) ○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 30,860천원 ○ 충남재난안전포털 유지보수비 : 42,530천원 ○ 기타 장비 예비 수리비 : 6,610천원	
총사업비	80,000천원(도비 8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80,000	-	90,000	80,000	△10,000	-	
국 비	-	-	-	-	-	-	
도 비	80,000	-	90,000	80,000	△1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0,000	35,217	4,783	88%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재난상황통신팀	김두기 (행)2185	서동석 (행)3244	서민원 (행) 2189

폭염대책비(야외쉼터운영, 홍보 등)(성립전)	정책사업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폭염대책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피해 예방 홍보활동 등을 통한 도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예방 추진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6. ~ 2020. 12.
- 예 산 액 : 250,000천원
※ 증감 사유 : 국비 교부에 따른 편성(2020. 6. 11.)
- 사 업 량 :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피해 예방 홍보활동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피해 예방 홍보활동 등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5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5항(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피해 예방 홍보활동 등 : 250,000천원 (국비 250,000천원) ○ 천안시 : 15,000천원, 공주시 : 38,000천원, 보령시 : 11,000천원, 아산시 : 14,000천원, 서산시 : 13,000천원, 논산시 : 12,000천원, 계룡시 : 6,000천원, 당진시 : 13,000천원, 금산군 : 6,000천원, 부여군 : 33,000천원, 서천군 : 30,000천원, 청양군 : 6,000천원, 홍성군 : 11,000천원, 예산군 : 9,000천원, 태안군 : 33,000천원	
총사업비	250,000천원(특교세 2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50,000	-	-	250,000	250,000		신규
국 비	250,000	-	-	250,000	250,000		특교세
도 비	-	-	-	-	-		
시군비	-	-	-	-	-		
기 타	-	-	-	-	-		

* 보조율 : 국비 1000%(특교세)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21,000	821,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의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 (행)2185	박상용 (행)3242	함지호 (행)3254

폭염대책비(성립전)	정책사업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폭염대책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여름철 폭염저감시설물 설치를 통한 도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예방 추진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6. ~ 2020. 12.
- 예 산 액 : **320,000천원**
※ 증 감 사 유 : 국비 교부에 따른 편성(2020. 5. 28.)
- 사 업 량 : 그늘막 75개소, 그늘목 10개소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폭염저감시설물 설치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5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5항(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폭염저감시설 설치 : 320,000천원 ○ 고정형 그늘막 · 2,500천원 × 52개소 = 130,000천원 ○ 스마트 그늘막 · 7,327천원 × 23개소 = 168,500천원 ○ 그늘목 · 2,150천원 × 10개소 = 21,500천원	
총사업비	320,000천원(특교세 32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20,000	-	-	320,000	320,000	-	신규
국 비	320,000	-	-	320,000	320,000	-	특교세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특교세)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21,000	821,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자난대응팀	김두기 (행)2185	박상용 (행)3242	함지호 (행)3254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4,580천원 【 지정액 : 168,300천원 + 추경 증감 : △63,720천원 】**
- ※ 증감 사유 : 국비감액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사업규모 축소)
- 사 업 량 : 내진성능평가 18건(상세 8건, 간이 10건), 인증 15건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
- 지원 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04,580천원(국도비) / 79,590천원(시군비,자부담) - 내진성능평가(상세) : 10,000천원 * 8개소 * 69% = 55,200천원 - 내진성능평가(간이) : 3,000천원 * 10개소 * 69% = 20,700천원 - 인증수수료 : 5,000천원 * 15개소 * 39% = 29,250천원 - 국비 부족에 따른 감액 : 국비 500천원 + 도비 70천원 (홍성군) ☞ 시군별 배정내역 -천안시 8,000천원, 공주시 8,000천원, 보령시 8,000천원, 아산시 15,000천원 -서산시 15,000천원, 논산시 8,000천원, 계룡시 15,000천원, 당진시 8,000천원 -금산군 8,000천원, 부여군 15,000천원, 서천군 18,000천원, 청양군 15,000천원 -홍성군 17,170천원, 예산군 8,000천원, 태안군 18,000천원	
총사업비	184,170천원(국비 88,000, 도비 16,580, 시군비 38,670, 기타 40,92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84,170	-	270,000	184,170	△85,830	-	신규사업
국 비	88,000	-	144,000	88,000	△56,000	-	국고
도 비	16,580	-	24,300	16,580	△7,720	-	
시군비	38,670	-	56,700	38,670	△18,030	-	
기 타	40,920	-	45,000	40,920	△4,080	-	

* 보조율 : 성능평가비(국비 60%, 도비 9%, 시·군비 21%, 민간자부담 10%)
인증수수료(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민간자부담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68,300	168,3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대응팀	김두기 (행) 2185	박상용 (행) 3242	박병현 (행) 2187

8.1.~ 호우피해 응급복구(성립전)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8.1.~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호우피해지역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1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년 8월 ~ 12월
- 예 산 액 : 2,000,000천원
- 사 업 량 : 응급복구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장비 임차비, 수방자재 등 재료비
- 지원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70조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8.1.~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 2,000,000천원 ○ 장비임차 : 1,862,000천원 - 백호 임차 660 × 800대 = 528,000천원 - 덤프 임차 500 × 1,800대 = 900,000천원 - 살수차 임차 550 × 300대 = 165,000천원 - 준설차 임차 2,690 × 100대 = 269,000천원 ○ 수방자재 : 138,000천원 - 마대구입 5천원 × 27,600개 = 138,000천원	
총사업비	2,000,000천원(국비 2,0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0	-	-	2,000,000	2,000,000	-	신규
국 비	2,000,000	-	-	2,000,000	2,000,000	-	특교세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복구지원팀	김두기 (행) 2185	최천규 (행) 3243	신동명 (행) 3257

7.28.~8.11.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지원금)(성립전)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7.28.~8.11.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재난지원금)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7.28.~8.11.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지급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년 9월 ~ 12월
- 예 산 액 : 10,556,850천원
- 사 업 량 : 사유시설 18,238건 재난지원금 지급(인명 4건, 주택 1,982건, 농업 15,880건, 기타 372건)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인명, 주택피해, 생계보조, 농축산물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 지원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70조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7.28~8.11. 집중호우 재난피해해자 지원(재난지원금) : 10,556,850천원 ○ 천안시 : 2,632,350천원(인명 3, 주택 551, 농업 3,937건, 기타 119건) ○ 공주시 : 84,000천원(주택 2, 농업 230, 기타 4건) ○ 보령시 : 24,000천원(주택 5, 농업 120건, 기타 3건) ○ 아산시 : 2,864,400천원(인명 1, 주택 719, 농업 3,386건, 기타 30건) ○ 서산시 : 61,750천원(농업 323건, 기타 1건) ○ 논산시 : 196,000천원(주택 13, 농업 551건, 기타 12건) ○ 계룡시 : 21,000천원(주택 3, 농업 16건) ○ 당진시 : 111,750천원(주택 10, 농업 274건, 기타 11건) ○ 금산군 : 2,431,100천원(주택 502, 농업 4,086건, 기타 111건) ○ 부여군 : 358,250천원(주택 7, 농업 501건, 기타 31건) ○ 청양군 : 36,500천원(농업 102건) ○ 홍성군 : 147,250천원(주택 14, 농업 462건, 기타 4건) ○ 예산군 : 1,459,500천원(주택 155, 농업 1,882건, 기타 33건) ○ 태안군 : 129,000천원(주택 1, 농업 10건, 기타 13건)	
총사업비	12,430,851천원(국비 10,556,850천원, 시군비 1,874,001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2,430,851	-	-	12,430,851	12,430,851	-	신규
국 비	10,556,850	-	-	10,556,850	10,556,850	-	국비
도 비	-	-	-	-	-	-	
시군비	1,874,001	-	-	1,874,001	1,874,001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85%, 시군비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복구지원팀	김두기 (행) 2185	최천규 (행) 3243	이준범 (행) 3256

7.28~8.11. 집중호우 재난대책비 (공공시설 국고추가)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7.28~8.11. 집중호우 재난 대책비(공공시설, 국고추가)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7.28~8.11. 집중호우' 공공시설 복구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4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년 10월 ~ 2021년 12월
- 예 산 액 : **68,473,364천원**
- 사 업 량 : 소하천, 소규모시설, 시·군·농어촌도, 기타 등 행정안전부 소관 642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호우로 피해입은 공공시설 항구복구 및 개선복구
- 지원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70조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7.28~8.11. 집중호우 대책비(공공시설, 국고추가)(성립전) : 38,595,000천원 ○ 천안시 : 16,744,000천원(142개소) ○ 아산시 : 2,513,600천원(74개소) ○ 금산군 : 1,920,900천원(343개소) ○ 예산군 : 17,416,500천원(85개소) ■ 7.28~8.11. 집중호우 대책비(공공시설, 국고추가) : 29,878,364천원 ○ 천안시 : 18,557,921천원 ○ 아산시 : 58,893천원 ○ 금산군 : 6,299,881천원 ○ 예산군 : 4,961,669천원 ※ 호우피해 복구계획으로 확정된 국비 68,473,364천원 중 38,595,000천원만 선교부 → 잔액 29,878,634천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확보 시 교부예정	
총사업비	92,524,781천원(국비 68,473,364, 시군비 24,051,417)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92,524,781	-	-	92,524,781	92,524,781	-	신규
국 비	68,473,364	-	-	68,473,364	68,473,364	-	국비
도 비	-	-	-	-	-	-	
시군비	24,051,417	-	-	24,051,417	24,051,417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74.0%, 시군비 2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복구지원팀	김두기 (행) 2185	최천규 (행) 3243	이준범 (행) 3256

태풍 제9호 및 제10호 피해 복구비 (재난지원금)(성립전)	정책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단위사업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세부사업	7.28.~8.11. 집중호우 자연재해자 지원(재난지원금)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태풍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재난지원금 지급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0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년 11월 ~ 12월
- 예 산 액 : **726,928천원**
- 사 업 량 : 사유시설 16건 재난지원금 지급(주택 10건, 생계지원 3건, 어선 3건)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주택피해, 생계보조, 어선 등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 관련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국비 16,616백만원 중 **자연재난과**(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727백만원, **산림자원과**(산림청) 8,575백만원, **식량원예과**(농림부) 7,314백만원으로 분배하여 예산편성·교부
- 지원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70조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태풍 제9호 및 제10호 피해 복구비(재난지원금) : 726,928천원 ○ 천안시 : 31,458천원(주택 1, 생계지원 1) ○ 아산시 : 5,250천원(주택 2) ○ 서산시 : 5,542천원(어선 2) ○ 논산시 : 40,661천원(생계지원 1) ○ 당진시 : 750천원(어선 1) ○ 금산군 : 600,031천원 ○ 부여군 : 16,290천원 ○ 홍성군 : 2,000천원(주택 2) ○ 예산군 : 19,946천원(생계지원 1) ○ 태안군 : 5,000천원(주택 5) ※ 금산, 부여는 ‘7.28.~8.11.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인삼값 변경상승분 임 (인삼 농약대 → 대파대)	
총사업비	1,094,689천원(국비 726,928, 시군비 367,761)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94,689	-	-	1,094,689	1,094,689	-	신규
국 비	726,928	-	-	726,928	726,928	-	국비
도 비	-	-	-	-	-	-	
시군비	367,761	-	-	367,761	367,761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66%, 시군비 3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복구지원팀	김두기 (행) 2185	최천규 (행) 3243	이준범 (행) 3256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과목경정)	정책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단위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시설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관리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난안전통신망(PS-LTE) 운용 규격에 맞는 단말기 구입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기정액 : 16,000천원 + 추경 증감 : △16,000천원 】
- ※ 증감 사유 :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로 변경
- 사 업 량 : 단말기 8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단말기 8대 구입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하 "긴급통신수단"이라 한다)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 따라 보유 중인 긴급통신수단이 효과적으로 연계 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 공공운영비 : 0천원 (당초예산 : 16,000천원, 추경증감 : △16,000천원) - 단말기 8대 × 2,000천원 = △16,000천원	
총사업비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	-	16,000	-	△16,000	-	
국 비	-	-	-	-	-	-	
도 비	-	-	16,000	-	△16,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재난상황통신팀	김두기 (행)2185	서동석 (행)3244	소현정 (행) 3260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과목경정)	정책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단위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시설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관리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난안전통신망(PS-LTE) 운용 규격에 맞는 단말기 구입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6,000천원** 【 기정액 : 0천원 + 추경 증감 : 16,000천원 】
- ※ 증감 사유 :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 기존 공공운영비(201-02)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로 변경
- 사 업 량 : 스마트폰형 단말기 12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단말기 12대 구입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련기관은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기관 간 재난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재난대응 절차를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시행령 제43조의12(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 및 사용) ③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를 위한 상황의 보고 및 전파
2. 응급조치 등 재난 대응의 지시 및 보고
3. 그 밖에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16,000천원) ○ 단말기 12대 × 1,333천원 = 16,000천원	
총사업비	16,00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6,000	-	-	16,000	16,000	-	
국 비	-	-	-	-	-	-	
도 비	16,000	-	-	16,000	16,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재난상황통신팀	김두기 (행)2185	서동석 (행)3244	소현정 (행) 3260

재난대비 긴급통신 민관합동 워크숍	정책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단위사업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시설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 운영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실비보상금(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재난으로 인한 통신두절 대비, 아마추어 무선연맹과의 협력관계 증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지정액 : 6,000천원 + 추경 증감 : △6,000천원 】**
- ※ 증감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워크숍 취소
- 사 업 량 : 재난대비 긴급통신 민관합동 워크숍 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 사업 내용 : 긴급통신무선망(HAM) 직무능력 강화교육 실시 및 활성화 방안 토의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제3조

제3조(도지사의 책무)

-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상황 발생 시에 일상의 통신수단이 끊어졌을 때 비상통신망으로써 아마추어 무선국의 역할을 인식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교신 훈련 등을 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아마추어무선국과의 협력 관계 구축과 충청남도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무관리비 : 0천원 (당초예산 : 4,000천원, 추경증감 : △4,000천원) ○ 객실료 : △1,200천원(4명×15실, 15실×80천원) ○ 시설사용료 : △500천원 ○ 강사료 : △1,200천원(2명×2회, 실습 포함) ○ 현수막제작 : △100천원 ○ 행사준비,운영(자료준비 등) : △500천원 ○ 기타(간식 및 기타 용품비) : △500천원 ■ 행사실비지원금 : 0천원 (당초예산 : 2,000천원, 추경증감 : △2,000천원) ○ 식비 : △1,440천원(8천원×3식×60명) ○ 생수, 음료 등 : △560천원	
총사업비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	-	6,000	-	△6,000	-	
국 비	-	-	-	-	-	-	
도 비	-	-	6,000	-	△6,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재난상황통신팀	김두기 (행)2185	서동석 (행)3244	소현정 (행) 3260

하 천 과



하 천 과

1.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도) 90
2.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시군자본) 94
3. 지방하천 정비사업(안성천수계) 98
4. 지방천 지방하천 정비(성립전) 100
5.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성립전) 102
6.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성립전) 104
7. 지방천 지방하천 정비(성립전) 106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도)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도)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02,03)

□ 사업개요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도) ○ 12시군 28개소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군	하천명	계	이양재원	도비	부담금	
	합 계	28개지구	46,475,000	22,790,500	19,171,500	4,513,000	
	천안시	병천천	500,000	250,000	250,000		
	〃	광기천	1,000,000	500,000	500,000		
	〃	장재천	100,000	50,000	50,000		
	공주시	마곡천	2,633,000	1,316,500	1,316,500		
		정안천	2,003,000	1,001,500	1,001,500		
	〃	중산천	4,200,000	100,000	100,000	4,000,000	
	보령시	간치천	400,000	200,000	200,000		

	서산시	도당천	3,800,000	1,900,000	1,900,000	
	"	석남천	5,121,000	2,560,500	2,560,500	
	"	명천석림천	3,000	1,500	1,500	
	"	청지천	850,000	425,000	425,000	
	논산시	신암천	2,200,000	1,320,000	880,000	
	"	웅천	1,425,000	855,000	570,000	
	"	신양천	300,000	150,000	150,000	
	"	왕암천	710,000	355,000	355,000	
	계룡시	연산천	7,383,000	4,122,000	2,748,000	513,000
	"	왕대천	150,000	75,000	75,000	
	당진시	오봉천	750,000	375,000	375,000	
	금산군	진산천	400,000	200,000	200,000	
	부여군	금천	7,600,000	4,560,000	3,040,000	
	"	주교천	600,000	300,000	300,000	
	"	칠산천	850,000	425,000	425,000	
	서천군	화산천	1,800,000	900,000	900,000	
	"	도마천	400,000	200,000	200,000	
	"	판교천	450,000	225,000	225,000	
	청양군	장승천	250,000	125,000	125,000	
	태안군	태안천	200,000	100,000	100,000	
	"	용요천	397,000	198,500	198,500	
총사업비	41,962,000천원(이양재원 22,790,500, 도비 19,171,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602,201,500	176,155,600	52,823,000	46,475,000	-6,348,000	379,570,900	계속비
국 비	96,541,750	96,541,750	-	-	-	-	-
도 비	498,015,250	76,482,350	52,823,000	41,962,000	-10,861,000	379,570,900	이양재원포함
시군비	-	-	-	-	-	-	-
기 타	7,644,500	3,131,500	-	4,513,000	4,513,000	-	부담금

* (2013년 이전 착수) 국비 60%, 지방비(도비) 40% 적용, (2014년 이후 착수) 국비 50%, 지방비(도비) 50% 적용

* (2020년 이후) 하천정비사업 지방이양(이양재원+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9,436,937	68,134,058	11,302,879	85.8%	11,270,598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계획팀	조훈구 (행) 2190	이승주 (행) 4704	김원식 (행) 2194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시군자본)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시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시군) ○ 10시군 14개소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 군	하천명	계	이양재원	도비	시군비	
	합 계	14개지구	49,649,000	25,063,000	7,376,000	17,210,000	
	천안시	풍서천	9,600,000	4,800,000	1,440,000	3,360,000	
	〃	지장천(공모)	300,000	150,000	45,000	105,000	
	공주시	대학천	2,000,000	1,000,000	300,000	700,000	
	〃	제민천	640,000	320,000	96,000	224,000	
	〃	청룡천(공모)	300,000	150,000	45,000	105,000	
	보령시	진죽천	3,000,000	1,500,000	450,000	1,050,000	

	아산시	초사천	10,000,000	5,000,000	1,500,000	3,500,000	
	"	온양천(공모)	300,000	150,000	45,000	105,000	
	논산시	중교천	2,383,000	1,430,000	286,000	667,000	
	당진시	서원천	3,000,000	1,500,000	450,000	1,050,000	
	금산군	조정천	4,000,000	2,000,000	600,000	1,400,000	
	"	추풍천	1,500,000	750,000	225,000	525,000	
	서천군	길산천	2,126,000	1,063,000	319,000	744,000	
	홍성군	삼교천	4,000,000	2,000,000	600,000	1,400,000	
	예산군	용굴천	6,500,000	3,250,000	975,000	2,275,000	
총사업비	32,439,000천원(이양재원 25,063,000, 도비 7,376,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40,013,000	143,530,700	38,842,000	49,649,000	10,807,000	146,833,300	계속비
국 비	77,719,920	77,719,920	-	-	-	-	-
도 비	147,786,800	19,743,234	25,578,000	32,439,000	6,861,000	95,604,566	이양재원 포함
시군비	114,506,280	46,067,546	13,264,000	17,210,000	3,946,000	51,228,734	
기 타	-	-	-	-	-	-	-

* (2013년 이전 착수) 국비 60%, 지방비(도비) 40% 적용, (2014년 이후 착수) 국비 50%, 지방비(도비) 50% 적용

* (2020년 이후) 하천정비사업 지방이양(이양재원+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7,606,210	27,594,799	11,411	99.96%	11,411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계획팀	조훈구 (행) 2190	이승주 (행) 4704	김원식 (행) 2194

지방하천 정비사업(안성천수계)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
	통 계 목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401-02,401-03)

☐ 사업개요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하천 정비사업(안성천수계) ○ 천안시 성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군	하천	합계	이양재원	도비	
	합계	1개 지구	7,029,000	3,514,500	3,514,500	
	천안시	성환천	7,029,000	3,514,500	3,514,500	
총사업비	7,029,000천원(이양재원 3,514,500, 도비 3,514,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9,731,000	40,702,000	9,029,000	7,029,000	-2,000,000	2,000,000	계속비
국 비	20,351,000	20,351,000	-	-	-	-	-
도 비	29,380,000	20,351,000	9,029,000	7,029,000	-2,000,000	2,000,000	이양재원 포함
시군비	-	-	-	-	-	-	-
기 타	-	-	-	-	-	-	-

* (2013년 이전 착수) 국비 60%, 지방비(도비) 40% 적용, (2014년 이후 착수) 국비 50%, 지방비(도비) 50% 적용

* (2020년 이후) 하천정비사업 지방이양(이양재원+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4,951,567	13,468,707	1,482,861	90.1%	1,482,861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계획팀	조훈구 (행) 2190	이승주 (행) 4704	김원식 (행) 2194

지방천 지방하천 정비(성립전)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금산군 진산면 일원 지방하천(지방천)의 치수능력을 향상하여 집중호우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 위치 : 금산군 진산면 일원
- 사업 기간 : 2020. 9. 1. ~ 2021. 07. 31.
- 예 산 액 : 500,000천원 【0천원 + 추경 증감 : △500,000천원】
- 사 업 량 : 하천정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금산군수
- 사업 내용 : 호안설치, 독마루포장 등
- 지원근거 : 하천법 27조 5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1~3호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홍수조절지·저류지·수문·선착장 등)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2조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하천 정비 1식 ○ 호안설치 L=700m, 독마루포장 L=400m	
총사업비	1,000,000천원(특별교부세 500,000, 군비 5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A-B)		
계	1,000,000	-	-	1,000,000	100,000	-	-
국 비	500,000	-	-	500,000	50,000	-	-
도 비	-	-	-	-	-	-	-
시군비	500,000	-	-	500,000	50,000	-	-
기 타	-	-	-	-	-	-	-

* 보조율 : 특교세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조훈구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성립전)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국가하천유지보수 (금강권역)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가하천 친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재해예방 및 주민 이용 편의 제공
- 사업 위치 : 금강·삽교천 수계 10개시군(천안,공주,아산,논산,당진시,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14,819,000천원 【8,320,000천원 + 추경 증감 : 6,499,000천원】**
- ※ 증감 사유 :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수문자동화) 사업비(국비) 추가 교부 반영
- 사 업 량 : 국가하천 7개소(연장 240.14km, 고수부지 16.41k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0개 시·군
- 사업 내용 :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관)
- 지원근거 : 하천법 27조 5항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하천 유지보수 ○ 국가하천 수문자동화 65개소 = 6,499,000천원 ○ 금강 등 7개 국가하천 유지보수(대전청 소관) 1식 = 8,320,000천원	
총사업비	14,819,000천원(국비 14,819,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A-B)		
계	100,479,000	49,412,000	8,320,000	14,819,000	6,449,000	36,248,000	
국 비	100,479,000	49,412,000	8,320,000	14,819,000	6,449,000	36,248,000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506,000	5,506,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조훈구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성립전)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국가하천유지보수 (안성천수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가하천 친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로 재해예방 및 주민 이용 편의 제공
- 사업 위치 : 안성천(천안시,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635,000천원** 【135,000천원 + 추정 증감 : 500,000천원】
- ※ 증감 사유 :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수문자동화) 사업비(국비) 추가 교부 반영
- 사 업 량 : 안성천(국가하천) 12.43k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보수(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 지원근거 : 하천법 27조 5항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하천 유지보수 ○ 안성천 수문 자동화 4개소 = 500,000천원 ○ 안성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1식 = 135,000천원	
총사업비	635,000천원(국비 63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A-B)		
계	1,221,000	180,000	135,000	635,000	500,000	406,000	
국 비	1,221,000	180,000	135,000	635,000	500,000	406,000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0,000	18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조훈구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

2020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정책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단위사업	하천 정비 및 관리
	세부사업	2020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통 계 목	시설비및부대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20. 7. 28.~8.11. 발생한 지방하천 193지구 호우피해를 복구하여 하천시설 기능복원 및 향후 피해재발 방지
- 사업 위치 : 도내 12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9. 1. ~ 2022. 12. 31.
- 예 산 액 : 12,320,962천원 【0천원 + 추경 증감 : 12,320,962천원】
- 사 업 량 : 호우피해 복구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하천시설 기능복원 186지구(지원복구 85, 자력복구 101), 개선복구 7지구
- 지원 근거 : 하천법 27조 5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1~3호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홍수조 절지·저류지·수문·선착장 등)

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2조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호우피해 복구 193지구 ○ 자력복구 101개소 설계비 및 공사비, 지원복구 92개소 설계비 등 12,320,962백만원	
총사업비	12,320,962천원(특별교부세 12,320,962)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A-B)		
계	140,787,752	-	-	12,320,962	12,320,962	128,466,790	-
국 비	98,215,762	-	-	-	-	98,215,762	-
도 비	30,251,028	-	-	-	-	30,251,028	-
시군비	-	-	-	-	-	-	-
기 타(특교세)	12,320,962	-	-	12,320,962	12,320,962	-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재난안전실	하천과	하천관리팀	조훈구 (행) 2190	김성환 (행) 4705	가두순 (행) 4724